



# ‘검색결과목록 링크삭제청구권’으로서의 잊힐 권리의 적용 기준에 관한 해외동향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1. 들어가며 : 검색결과목록 링크삭제청구권으로서의 잊힐 권리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개인의 인격권, 특히 프라이버시 보호의 한 방편으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sup>1)</sup>이다. 잊힐 권리라는 용어는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Viktor Mayer-Schönberger)가 2009년에 발간한 책을 통해 대중화되었다. 잊힐 권리의 법적 성격이 구체화 된 것은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의 구글스페인 대 곤잘레스 결정을 통해서인데, 이 결정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검색엔진 사업자인 구글이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처리, 통제자(controller)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변호사 곤잘레스가 오래전에 겪었던 재정적 어려움에 관한 신문기사 링크를 구글 검색결과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명하였다.<sup>2)</sup> 즉,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 이래로 잊힐 권리는 ‘검색결과목록 링크삭제청구권’(이하 ‘링크삭제청구권’)으로 발전되고 있다.

1) ‘The right to be forgotten’의 역어로 ‘잊혀질 권리’와 ‘잊힐 권리’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국어 문법에 맞는 표현은 ‘잊힐 권리’라고 하므로 이 글에서는 ‘잊힐 권리’로 통일하여 지칭한다.

2) 유럽사법재판소, (2014. 5. 13.) Case C-131/12, Google v. AEPD & González([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jsessionid=9ea7d0f130d5b6c0ef0cfcc34664af65824af1275c09\\_e34KaxiLc3eQc40LaxqMbN4OaNmNe0?text=&docid=152065&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433471](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jsessionid=9ea7d0f130d5b6c0ef0cfcc34664af65824af1275c09_e34KaxiLc3eQc40LaxqMbN4OaNmNe0?text=&docid=152065&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433471))

현재 잊힐 권리는 유럽을 중심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링크삭제요청 판단의 첫 주체가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검색엔진사업자라는 점에서 잊힐 권리의 인정 범위 및 그 적용기준에 대한 논의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 함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한국에서도 곤잘레스 판결 이후 잊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한국에서는 잊힐 권리라는 용어가 링크삭제청구권을 넘어서 기사삭제청구권<sup>3)</sup>과 같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잊힐 권리를 링크삭제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에 한정하고자 한다.<sup>4)</sup>

곤잘레스 판결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충돌하는 두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어려운 숙제의 최신판이라 할 수 있다. 잊힐 권리의 인정은 사적 검열의 문을 열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힘 있는 쪽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공공적 성격의 기록들을 검색결과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하여 공중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권을 제약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링크삭제요청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들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해외에서는 잊힐 권리 집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몇 가지 지침들이 제시되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지침들에 제시된 링크삭제청구권 판단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곤잘레스 판결 이후 현재까지, 구글이 잊힐 권리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져 있는 사례들을 간략히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국내 잊힐 권리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해외 지침 검토

### (1) 배경 및 과정

유럽사법재판소는 곤잘레스 판결을 내리면서 잊힐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이익형량이 필요하고, 이러한 이익형량에는 해당 정보의 성질—즉 해당 정보가 해당 개인의 사적인 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인지 그리고 해당 정보가 알려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등—과 해당 개인이 누구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덧붙

3) 2015년 6월 30일에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개최, '기사삭제청구권과 잊혀질 권리' 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주정민 교수는 이 제는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기사삭제청구권 도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4) 구글 잊힐 권리 자문위원회도 2015년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곤잘레스 판결이 정확히는 검색결과목록에서의 삭제(delisting)에 관한 것이므로 자신들의 보고서 전반에 걸쳐 '잊힐 권리'라는 용어 대신 '목록에서의 삭제(delisting)'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였다. 이러한 기준들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된 것이 제29항 정보보호전문위원회(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가 2014년 11월 26일에 발표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구글 스페인 대 곤잘레스 결정의 집행에 관한 지침”이다.<sup>5)</sup>

한편 구글은 곤잘레스 판결 직후인 2014년 5월 29일부터 링크삭제요청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요청을 처리함에 있어 개인의 잊힐 권리와 공중의 정보접근권을 조율하는데 사용할 기준점을 정립하기 위해 독립 자문위원회<sup>6)</sup>를 구성하였다. 구글 잊힐 권리 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uncil to Google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이하 ‘구글 자문위원회’)는 유럽 7개 도시를 돌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후 2015년 2월 6일에 보고서(report)를 내놓았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 링크삭제요청(delisting requests) 판단기준 4가지를 제시하였다.<sup>7)</sup>

야후 재팬은 2014년 10월에 일본 법원이 구글에게 검색결과링크를 삭제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자<sup>8)</sup>, 그 직후인 2014년 11월에 ‘검색결과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고 검색결과 페이지에 표시되는 정보를 삭제하는 문제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총 3번에 걸친 전문가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야후 재팬은 2015년 3월 30일에 ‘검색결과 삭제(비표시조치) 신청을 받았을 경우 야후의 대응방침에 관해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표하였다.<sup>9)</sup>

## (2) 제시된 기준들 : 링크삭제청구권 판단 기준들

이러한 지침들에 언급된 기준들은 대동소이하다. 유럽 정보보호전문위원회의 13가지 기준들은 구글 자문위원회의 4가지 기준 및 그 세부 항목들로 수렴되며, 야후 재팬이 제시한 기준들은 유럽 정보보호전문위원회와 구글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기준들의 축약으로 볼 수 있다.

5) 지침서 전문은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article-29/documentation/opinion-recommendation/files/2014/wp225\\_en.pdf](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article-29/documentation/opinion-recommendation/files/2014/wp225_en.pdf)에서 볼 수 있다.

6) 이 자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8인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구글 관계자 2명이 의장/주최자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위원회 구성원들은 공청회 참석을 위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구글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7) 자문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설명, 유럽 7개 도시에서 열렸던 공청회 자료, 자문위원회 보고서 전문은 웹사이트(<https://www.google.com/advisorycouncil/>)에서 찾아볼 수 있다.

8) 『AP』, 2014. 4. 1. Yuri Kageyama, “Japan Court Orders Google To Remove Search Results”, <http://news.yahoo.com/japan-court-orders-google-remove-search-results-100248499—finance.html>(검색일:2015.8.25.)

9) 해당 보고서는 다음의 페이지(<http://publicpolicy.yahoo.co.jp/2015/03/3016.html>) 중간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공통기준1 정보주체의 속성 ]

모든 지침들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기준은 삭제를 요청한 정보주체의 속성에 관한 것이다. 우선, 정보주체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인(public figure)인지 아니면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 없는 사인(私人)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 주체가 공적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가 공중에게 알려지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므로, 링크삭제요청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유럽정보보호전문위원회는 ‘공적인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들의 예로 정치인, 고위 공직자, 기업인, 그리고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규제를 받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나열하면서, ‘해당 개인에 대한 정보가 공중에게 알려질 경우 해당 개인이 부적절한 공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아지는가를 따져볼 것’을 손쉬운 판별법으로 제시하였다. 야후 재팬 역시 공직자, 의원, 일정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 기업이나 단체의 대표 임원, 연예인에 관한 정보는 공익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글 자문위원회는 유사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정보주체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유형은 공인임이 확실한 사람들(clear roles in public life)로 정치인, 기업 CEO, 유명 연예인, 종교지도자, 스포츠 스타, 공연 예술가를 예로 들면서, 이들의 링크삭제(delisting) 요청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이름을 검색어로 하여 이들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이 중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둘째 유형은 아무런 공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링크삭제요청이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하였다. 셋째 유형은 제한적 형태로 혹은 특정 맥락에서만 공적 역할을 하는 (limited or context-specific role in public life) 사람들인데, 학교의 장 (school directors), 일부 공직자/공무원(some kinds of public employees),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적 관심을 받게 된 사람, 자신의 직업 때문에 특정 커뮤니티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그 예로 들면서, 이들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내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글 자문위원회가 유럽이나 일본과 다르게 셋째 유형에 해당하는 개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미국 법원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의 입증 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원고 유형 중 하나인 ‘제한적 형태의 공인 (limited-purpose public figure)’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링크삭제청구권에서도 정보주체의 유형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유형은 더욱 세분화 된 것이기는 하나 개인의 공적 역할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는 기본 원칙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하겠다.

모든 지침들이 링크삭제요청자의 공적 역할 수행 여부에 덧붙여 제시하고 있는 기준



은 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여부이다. 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인인 경우보다 링크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 [ 공통기준2 정보의 성질 ]

유럽정보보호전문위원회 지침의 13가지 기준들 중 절반 정도는 정보의 성질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가령 기준 6은 정보의 민감성(sensitivity)에 대한 질문으로 유럽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의 건강, 성, 혹은 종교적 신념에 관한 정보일 경우에는 링크삭제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유럽정보보호전문위원회는 정보의 성질에 관련되는 기준점들을 개별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구글 자문위원회와 야후 재팬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선시 되는 정보 유형들’과 ‘공익이 우선시 되는 정보 유형들’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시 방식의 차이는 유럽정보보호전문위원회와 구글의 입장 차이를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정보보호전문위원회의 경우, 당해 정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선시 되는 정보 유형들’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질문들을 판단기준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 질문들에 부정적인 답을 하게 되는 경우, 즉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선시 되는 정보 유형이 아닌 경우에는 공중의 정보접근권이 우선시 되는 정보라는 소극적 유추가 가능하다. 반면, 구글 자문위원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선시 되는 정보 유형들’에 추가하여 혹은 그와는 별개로 ‘공익이 우선시 되는 정보 유형들’을 나열하고 있어, 검색결과목록에서 링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어야 할 이유가 다분한 여러 정보 유형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표>를 통해 구글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정보의 성질에 따른 분류를 제시하고, 이러한 분류에 대해 유럽정보보호전문위원회와 야후 재팬에서 유사한 기준들을 언급하였는지 여부를 표시하였다. 한편, 유럽정보보호전문위원회 지침에만 언급되어 있는 정보의 성질에 관한 2가지 추가기준들이 있는데 첫째는 해당 정보가 혐오 표현(hate speech) 혹은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표현들인지의 여부이며, 둘째는 정보주체에 대해 불필요한 편견을 유발하는 표현들인지의 여부이다. 또한, 야후 재팬의 경우, 과거의 피해사실에 관한 정보 (즉, 범죄 피해자 혹은 왕따 피해자였던 사실에 관한 정보) 및 문과(출생 및 가족사항)에 관한 정보를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선시 되는 정보유형들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표〉 구글 잊힐 권리 자문위원회의 정보의 성질에 따른 분류

구글 자문위원회 분류 항목		유사항목 언급여부	
		유럽 지침	일본 지침
<b>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선시 되는 정보 유형들</b>			
1	개인의 은밀한(intimate) 혹은 성(sex) 생활에 관한 정보 (단, 공인은 예외일 수 있음)	언급	언급
2	개인 재정(financial) 정보: 은행계좌정보와 같은 구체적 정보 (단, 월급이나 재산 같은 일반적인 정보와, 특히 공인의 재산정보, 주식회사 주식보유현황 정보, 부패여부 조사관련 재산정보는 공익성이 높을 수 있음)		
3	개인 연락처 및 신상정보: 개인 전화번호, 주소,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번호, 암호, 신용카드번호 등		언급
4	유럽개인정보보호지침에 규정된 민감정보 (인종/민족, 정치, 종교적 성향, 노동조합가입여부, 건강, 성 생활 관련 정보; 단, 공인은 예외일 수 있음)	언급	일부 언급
5	미성년자 개인 정보	언급	언급
6	거짓 정보, 부정확한 정보, 혹은 개인에게 해악을 미칠 정보	언급	유사 언급
7	이미지나 비디오 형태이어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이 더 높은 정보		유사 언급 (성적 이미지 및 동영상)
<b>공익이 우선시 되는 정보 유형들</b>			
1	정치적 논의, 시민 참여, 혹은 통치에 관련된 정보		
2	종교 혹은 철학적 논의에 관련된 정보		
3	공중 건강과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정보		
4	범죄행위에 관련된 정보 (구체적인 법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의 경중, 범죄행위에서 정보주체의 역할, 최신 정보인지, 정보원이 어디인지, 정보주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 달라짐. 인권을 침해한 범죄이거나 인류에 대한 범죄인 경우는 링크삭제요청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함)	언급	언급 (‘징계처분등의 이력’을 추가언급)
5	일반 관심 주제에 대한 논쟁에 도움이 되는 정보 (일반 관심주제의 예로는 노동쟁의/산업분쟁(industrial disputes)과 사기행위)		
6	진실한 사실 정보 (factual and true)	언급	
7	역사적 기록에 필수적인 정보, 즉 역사적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에 관한 정보		
8	과학적 조사나 예술적 표현에 필수적인 정보, 가령 정보주체가 예술적 패러디물에 이용된 경우		

[ 공통기준3 정보 공표의 맥락과 정보의 출처 ]

세 번째 공통기준은 유럽과 구글의 지침에서는 유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지만, 야후 재팬의 보고서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다. 우선, 유럽정보보호전문위원회는 정보 공표에 대한 동의 여부 및 기존 동의 철회의 용이성을 개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별개의 기준으로 언론 보도를 목적으로 공표된 정보인 경우 링크삭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 다른 기준 항목을 통해 법적 권한



이나 의무가 있는 주체가 공표한 정보인 경우에도 링크삭제 요청을 받아들여기가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구글 자문위원회의 경우, 정보의 출처(source)와 공표(publication)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널리즘 관행을 준수하는 언론사가 게시한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검색결과목록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근거가 낮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공표한 문서, 알려진 블로거(blogger)나 신뢰도가 높고 평판이 좋은 개인 필자들이 공표한 정보, 그리고 정보주체 스스로가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정보에 대해서도 검색결과목록 삭제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밝히고 있다.

#### [ 공통기준4 시간의 흐름 ]

마지막 공통기준은 시간의 흐름인데, 이는 잊힐 권리가 일정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특정 정보가 더 이상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아닐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하겠다. 유럽정보보호전문위원회는 낡은 정보로 더 이상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정보라면 검색결과 목록에서 삭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적시하고 있고, 구글 자문위원회 역시 네 번째 기준으로 '시간'을 언급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구글 자문위원회의 경우,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증대한 공중의 관심사에 해당 하는 것, 가령 인류에 대한 범죄에 관한 정보는 검색결과목록에서 삭제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고, 과거의 정보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공중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경우—가령 과거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경우나 공인이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에 관한 정보인 경우—에는 링크삭제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글 자문위원회가 이러한 예외사항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 혹은 공중의 정보접근권을 중요시하는 미국적 전통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야후 재팬은 '이미 장기간이 경과한' 과거의 경미한 범죄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시간의 흐름을 범죄에 관한 정보를 판단하는데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장기간 경과'의 예로 쇼와시대(1926년-1983년)를 들고 있어, 최소 3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경우를 '장기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유럽, 미국, 일본의 지침에 제시된 기준들을 살펴보았다. 언론·출판의 자유 관점에서 보면, 유럽과 미국의 지침이 언론 보도 목적으로 공표된 정보 혹은 저널리즘 관행을 준수하는 언론사가 게시한 정보, 신뢰받는 블로거나 개인 필자들이 공표한 정보의 경우에는 링크삭제청구권을 받아들여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정보주체의 속성과 정보자체의 성질에 있어서 공인인지의 여부 그리고 공적사안 혹은 일반 관심주제인지의 여부가 지속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인에 대한 혹은 공적사안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링크삭제청구는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잇힐 권리, 즉 링크삭제청구권이 어떻게 집행되어 오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3. 해외 적용사례 검토

#### (1) 구글의 잇힐 권리 집행

구글은 자사가 잇힐 권리를 어떻게 집행해 오고 있는지 구글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sup>10)</sup>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15년 9월 4일에 업데이트된 자료인데, 이에 따르면 구글이 링크삭제요청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시작한



2014년 5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요청의 숫자는 삭제요청건수(request)로 따지면 총 311,571건이고, 여러 개의 링크 삭제를 한 번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삭제요청된 링크수(URL)는 총 1,102,592개라고 한다.

구글은 지금까지 삭제 요청된 링크들 중에서 41.5%의 링크들을 삭제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링크삭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10개 사이트를 언급하고 있는데, 1위는 페이스북, 2위는 프로파일엔진(profileengine.com)이다. 이 10개 사이트들 중에 언론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모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혹은 인명/주소검색 서비스이다.

이러한 통계정보와 함께 구글 투명성 보고서는 구글이 그동안 처리했던 22가지 사례를 예로 제시하고 있다. 구글이 30만건이 넘는 링크삭제요청들 중에서 어떻게 22가지

10) <Google Transparency Report>, "European Privacy Requests for Search Removals", <https://www.google.com/transparencyreport/removals/europeprivacy/> (최종 업데이트일: 2015. 9. 4.).



사례들을 뽑아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투명성 보고서에 소개된 22가지 사례들이 전체 경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22가지의 사례들은 구글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기준 및 예제에 해당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 22가지 사례들 중 링크삭제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10개인데 공적 역할이 없는 사인이 오래전에 일어났던 범죄의 피해자였던 경우나, 공적 역할이 없는 개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경우와 형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 개인의 주소가 보여진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등이다.

반면 링크삭제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1개의 사례들은 고위 공무원, 유명 기업인, 성직자들이 저지른 범죄 및 범죄 혐의에 관한 보도들, 혹은 공인이 아닐지라도 업무상 저지른 사기 및 금융 범죄에 대한 보도, 성범죄로 인한 해임에 관한 보도, 과거 성직자 시절에 있었던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한 보도 등이었다. 마지막 하나의 사례는 자신의 의료사고를 다룬 50여 개의 신문기사 링크를 삭제해 달라는 의사의 경우였는데, 해당 의사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관련 시술은 언급되지 않은 3개의 페이지 링크는 삭제되었고, 의료사고를 다룬 나머지 기사 링크들은 검색결과에 남아있다고 한다.

한편 구글은 위에 요약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잊힐 권리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지난 5월에는 80여명의 학자들이 구글에 공개서한을 보내 잊힐 권리 집행 현황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sup>11)</sup>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영국의 가디언(Guardian)이 구글 투명성 보고서의 소스 코드에 숨겨져 있던 데이터를 발견하여, 2015년 3월까지의 구글의 잊힐 권리 집행 현황을 보여주는 추가 자료들을 공개하였다. 가디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sup>12)</sup> 전체 요청의 95.6퍼센트는 사인(private personal)들이 요구한 것이며, 이러한 요청들 중 48%가 받아들여져 링크들이 삭제되었다고 한다.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구글이 접수한 요청들의 대부분은 개인 정보(private or personal information)에 관한 것들이었다. 또한, 중범죄, 공인, 정치, 그리고 어린이 보호 관련 사안들에 대한 링크삭제요청은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했고 해당 요청이 받아들여진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이들 4개의 유형에 해당하는 정보 중 링크가 실제로 삭제된 경우를 모두 합쳐도 전체 삭제 비율의 1% 미만이었다고 한다.

잊힐 권리를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가디언이 공개한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잊힐 권

11) 『Guardian』, 2015. 5. 14. Jemima Kiss, "Dear Google: Open Letter from 80 Academics on 'Right to Be Forgotten'", <http://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5/may/14/dear-google-open-letter-from-80-academics-on-right-to-be-forgotten>(검색일: 2015. 9. 1.)

12) 『Guardian』, 2015. 7. 14. Sylvia Trippmann & Julia Powles, "Google Accidentally Reveals Data On 'Right to Be Forgotten' Requests", <http://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5/jul/14/google-accidentally-reveals-right-to-be-forgotten-requests>(검색일: 2015. 9. 1.)

리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은 기우였으며 실제 잊힐 권리 집행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텔레그래프( Telegraph)와 BBC 등의 언론사들은 구글 검색결과 목록에서 삭제된 자사 기사목록을 제시하며, 언론 자유 침해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sup>13)</sup>

## (2) 기타 잊힐 권리 집행 사례

한편, 유럽을 제외한 지역들에서 곤잘레스 판결 이후 잊힐 권리의 집행을 명령한 사례들이 몇가지 있다. 2015년 1월 멕시코 프라이버시보호당국은 구글 멕시코에게 멕시코의 잊힐 권리 법에 따라서 유명 사업가에 관한 신문기사 3건 링크들을 삭제할 것을 명령한 바 있고,<sup>14)</sup> 브라질의 경우에는 곤잘레스 판결을 잘못 해석하여 링크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 내용 자체를 온라인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했는데 하급법원들이 이러한 요청들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나중에 상급법원이 평결을 뒤집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sup>15)</sup>

일본에서는 2014년 10월 법원이 구글에 검색결과 링크를 삭제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무죄로 판명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이 해당 범죄를 보도한 10년 전 기사에 언급되고 있으므로 링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링크삭제청구권과는 다른 형태의 잊힐 권리를 2015년 1월 1일부터 인정하고 있다. 소위 ‘온라인삭제법’(Online Eraser Law)이라 불리는 이 법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자신이 게시한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온라인 사업자는 이 삭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sup>16)</sup>

13) 『The Telegraph』, 2015. 9. 3. Rhiannon Williams, “Telegraph Stories Affected By EU ‘Right To Be Forgotten’”, <http://www.telegraph.co.uk/technology/google/11036257/Telegraph-stories-affected-by-EU-right-to-be-forgotten.html>(검색일: 2015. 9. 3.); 『BBC Blog』, 2015. 6. 25. Neil McIntosh, “List of BBC Web Pages Which Have Been Removed from Google’s Search Results”, <http://www.bbc.co.uk/blogs/internet/entries/1d765aa8-600b-4f32-b110-d02fbf7fd379>(검색일: 2015. 9. 3.)

14) 『Wall Street Journal』, 2015. 5. 27. Laurence Iliff, “Google Wages Free-Speech Fight in Mexico”. <http://www.wsj.com/articles/google-wages-free-speech-fight-in-mexico-1432723483>(검색일: 2015. 9. 2.)

15) Tais Gasparian, 2015. “Brazilian 2014 Court Decisions: Most Important Developments”, Justice for Free Expression 학회 발표문 (<https://globalfreedomofexpression.columbia.edu/wp/wp-content/uploads/2015/04/Gasparian-FoE-Brazilian-2014-Court-Decisions.pdf?a2663e> 참조)

16) 『The Week』, 2015. 1. 2. Lydia A. Jones, “Will California’s Confusing New ‘Online Eraser’ Law for Minors Work?”, <http://theweek.com/articles/441431/californias-confusing-new-online-eraser-law-minors-work>(검색일: 2015. 9. 1.). 이 법은 제 3자가 게시한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권리 수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4. 마치며

지금까지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잊힐 권리 집행과 관련한 해외 지침들 및 실제 적용사례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검토가 국내의 잊힐 권리 논의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까지 해외에서 논의, 집행되고 있는 잊힐 권리는 링크삭제청구권으로서의 잊힐 권리이며, 이러한 링크의 삭제조차 모든 검색결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과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자로 간주되는 외부 검색엔진사업자가 제공하는 검색결과에만 한정되고 있다. 링크의 삭제가 아닌 내용 자체의 삭제를 의미하는 ‘기사삭제청구권’과 같은 형태의 잊힐 권리의 도입이 논의되거나 적용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둘째, 링크삭제청구권 집행 지침들 그리고 실제 집행 사례들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된 것은 정보주체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와 해당 정보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였다. 정보주체가 공인이거나 일정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정보의 성질 상 공중의 정보접근권이 우선시 되는 경우에는 링크삭제청구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 또한, 보도 목적으로 공표된 기사들과 신뢰도 높은 개인 필자들이 게시한 정보의 경우에도 링크삭제청구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링크삭제청구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공인과 공적사안에 관한 정보 및 언론보도에 대한 공중의 접근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점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링크삭제청구권의 실제 집행에 관해 가디언지가 보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구글이 2015년 3월까지 접수한 전체 요청의 95.6%가 언론기사가 아니라 개인정보들에 대한 링크삭제요청이었다는 사실은 잊힐 권리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와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에의 접근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해외 잊힐 권리 집행이 노정하고 있는 실제 이슈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는 글에 대해 삭제 요청을 받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 혹은 임시조치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에 더해 추가적인 권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